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7.(목)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8월 29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30일

3. 제안 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폐교활용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폐교재산관리위원회 기능 등(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대부·매각 등(안 제7조)
- 계약의 해지 등(안 제8조)
- 공유재산삼의회 자문(안 제9조)

5.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 이유

-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신도시 중심으로의 도시개발이 폐교 증가를 가속화시킴에 따라 폐교 활용 및 개선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폐교활용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따라서 폐교재산의 종합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 제정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명확히 하였고

- 안 제3조에는 폐교재산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 촉진, 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 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하여 폐교재산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에는 매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기본이 되는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에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¹⁾ 제130조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짐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폐교활용법(약칭), 공유재산법(약칭)에서 말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계약의 해지·해제를 충북교육청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안전하게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1)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충북교육청의 폐교재산관리 현황을 보면¹⁾ 2023년 3월 기준으로 폐교 학교 수는 261교이며 이 중 매각 학교 수는 131교 (50.2%), 자체활용 29교(11.1%), 대부 80교(30.7%)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미활용교는 21교(8%)에 이르고 있으며 산간벽지 등 원격지에 소재. 정기적인 현지 확인이 어려운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관리인 지정을 이용한 관리가 필요함

- 폐교재산과 관련해서 「2022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감사의견서」에 폐교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 종합적 관리 대책 수립으로 폐교재산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적한 바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폐교재산의 종합적 관리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 구성과 활용 촉진에 관한 것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사료됨

1) 아래 표-1 참조

【표-1】충북교육청 폐교 및 폐교재산 관리현황

○ 연도별 폐교현황

(2023. 3. 1.기준)

연도	'82 '95	'96 '00	'01 '05	'06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폐교수	125	66	13	20	6	3	2	0	3	3	9	3	1	4	3	261

○ 폐교재산 관리현황

(2023. 3. 1.기준)

폐교 학교수	대 각 폐교수	현 보 존 폐 교				비 고
		자체활용	대 부	활용추진	계	
261 (100%)	131 (50.2%)	29 (11.1%)	80 (30.7%)	21 (8%)	130 (49.8%)	

※ 폐교재산 활용현황 세부내역 별첨【붙임 2】

- 다만, 대부기간 종료 후에도 폐교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이 발생하거나 자진 퇴거하지 않아 소송 등 재산권 침해사태 및 계약자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대부료 미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